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139~139p 번호 : 26	해설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u>일부 임금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2026.4.7. 개정으로 삭제되었다.</u>	① (x)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u>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제52조 제2항 제2호(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지급) 또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u>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